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동향



투스 로이터 코리아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내용 및 동향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및 [학회논문]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동향

2023년 3월 14일 공포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진행된 실질적인 전면 개정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체계를 일원화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변화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nB IP Exclusive Report Vol.18은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LAWnB IP Exclusive Report 에 포함된 콘텐츠는 로앤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를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에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투스론로이터코리아

정보제공 동의 로펌 (가나다순)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올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8

LAWnB IP Exclusive Report: Highlights and Trends of Privacy Act Revision in 2023
Thomson Reuters
www.lawnb.com



Table of Contents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동향

[21200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살펴보기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11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15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18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19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20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21

[2120089]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위원장 / 정무위원회

제안일 2023. 2. 17

의결일 2023. 2. 27

● 제안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당 로앤비 입법동향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살펴보기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김선희, 안다연, 허승진

2023. 3. 13



법무법인(유)
율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새로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고용관계 등을 포함)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 변경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해당되었던 규제가 개정법으로 인해 일원화되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상한과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제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14. 공포되어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2023. 9. 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2011 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2020 년 데이터 3 법 개정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i)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일부 완화하였고, (i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ii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였으며, (iv) 일부 형사적 제재 사유를 과징금 부과 사유로 전환하면서 과징금 상한 및 부과 사유를 확대하고, (v)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vi) 이동형 영상처리 기기의 운영 기준 마련, (vii)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강화 등의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완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현행법")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경우 일부 엄격한 예외만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불가피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불가피성이라는 요건이 없이도 계약이행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는 동의 외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를 포함)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금융 및 공공 분야에 한정되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되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관한 규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논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

현행법은 데이터 3 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상당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 사실을 안 때에는 24 시간 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위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34 조 제 1 항, 제 3 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7)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 20 조의 2).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8)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 39 조의).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제 31 조의 2).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 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가 일원화 되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달라지는 규제들을 살피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형사적 제재에서 행정적 제재로의 전환

형사처벌 대상 범위의 변화

개정법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행정적 제재 내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아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제 71조 제 1항 제 3호),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 73조 제 1항 제 5호) 등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과징금 상한 상향 및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정비하면서 과징금 상한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 64조의 2 제 1항).

다만, 개정법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 64조의 2 제 2항).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보호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법 하에서는 처분 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 64조의 2 제 3항).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포함되는 등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게 묻고 형벌로 규율하는 등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 제재로 전환하였으나,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의 다양화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추가된 국외

이전 요건에는 (i) 법률,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i)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ii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iv)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국내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 28 조의 8 제 1 항).

한편 개정법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 28 조의 9).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불복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예정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양한 이전 요건들을 고려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위원회의 중지 명령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정법은 드론 등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 수반되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 하에서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얼굴 정보 등)의 촬영이 가능합니다(제 25 조의 2). 다만 개정법 하에서도 “촬영”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등 추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기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강화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참여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제 43 조 제 1 항). 또한 현행법 하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개정법 하에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제 47 조 제 3 항).

더불어, 개정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및 사실조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 45 조).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새로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공공 분야를 넘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법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고용관계 등 포함)의 경우 개정법의 규제 일원화로 인해 의무사항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Compliance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법무법인(유) 율촌

허승진, 안다연, 김선희, 손도일

2023. 5. 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는 (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을 위한 규정 정비,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구체적 근거 마련,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설치·운영 지침 구체화, (5) 과징금 부과규정 정비, (6)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 과정을 강조하고,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규제 실무가 구체화되는 과정과 법규 준수를 위해 예방적인 점검과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어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출액 관리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2023.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40 일의 입법예고 기간(2023. 5. 19. ~ 2023. 6. 28.)을 거친 뒤 개정법과 함께 2023. 9. 15.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을 위한 규정 정비,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구체적 근거 마련,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설치·운영 지침 구체화, (5) 과징금 부과규정 정비, (6)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

개정법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정을 통합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규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및 이용자수를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 내역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의무 규정이 통합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년도말 기준 직전 3 개월간 일일 평균 기준 (i) 5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ii) 100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영 제 15 조의 3).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지 및 신고 시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 시간 내 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i) 1 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ii)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iii)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접근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3 가지에 해당될 때에는 72 시간 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영 제 40 조)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영 제 30 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결정 기준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영 제 32 조의 2)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관련

개정법에서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에 의존하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요건을 다양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동의 방법에 대한 형식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③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④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의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영 제 17 조).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영 제 14 조의 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호위원회의 평가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영 제 31 조의 2 및 제 31 조의 3).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관련 구체적 근거 마련

개정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신설 국외 이전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해졌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인정 시 보호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및 절차 등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되었습니다(영 제 29 조의 10, 제 29 조의 11).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②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③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④ 이전 중지가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영 제 29 조의 12).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설치·운영 지침 구체화

개정법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제 1 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는데,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제한에 대한 예외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별·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영 제 22 조).

새롭게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나(개정법 제 25 조의 2 제 2 항), 예외적으로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 27 조의 2).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을 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하는데,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 27 조의 3).

5. 과징금 부과 규정 정비

개정법에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 분의 3'으로 상향하고(법 제 64 조의 2 제 1 항),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①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또는 ②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화·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영 제 60 조의 2).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별표 1 의 5 를 개정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및 산정 기준, 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분쟁조정제도 제도 구체화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①분쟁조정신청 이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 ②분쟁조정이 확정 판결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 ③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종결 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정 신청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영 제 51 조의 2).

또한, 분쟁조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조사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당사자에게 증거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영 제 51 조의 3).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동의권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실질적 의사에 의해 동의 여부를 결정,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의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형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등과 같이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동의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해당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활용하고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 등을 통해 규제 실무가 구체화 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강한 경제 제재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관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된 만큼 “관련 매출액” 관리와 함께 세분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참고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 율촌

윤종욱, 정세진, 김시목

2023. 3. 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변화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일반화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둘 사이에 준용 관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항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삭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요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공포된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공포된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 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일반화하였으며, (3)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요건 다양화 등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정비하는 등의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도 함께 준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사항 중 금융회사에서도 참고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할 사항이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제 35 조의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리·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 3 자(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정보를 수신하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송요구권 도입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금융회사는 본 규정과 관련된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정립될지 및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 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삭제

개정법에서는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체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관련 규정 삭제

정보통신서비스를 1 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하여야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동의없이 국외이전이 가능한 요건 확대 및 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제 4 절)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국외이전 동의를 받는 경우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동등한 보호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규정 정비(제 20 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만 부여되던 이용 내역 통지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앱 또는 웹을 통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 6 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에 따라 일부 엄격한 의무들을 준수하여 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 앱서비스에 1 년동안 로그인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할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회사가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3) 앱·웹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도 동의없이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관련 하위규정이 정비되는 과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정

1)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요건 개선(제 15 조)

개정법에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새로운 예외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고지(제 23 조 제 3 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시의 동의 예외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에 의해 금융회사가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앱 또는 웹을 통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 <108-0>

정원준 (Chung Wonjun)

2023 년 1 월

● 초록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consent)는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의 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유연한 절차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의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는 동의의 제도 모형이 엄격한 사전동의(opt-in)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한 번의 동의로 최대한 많은 항목을 확보하려다 보니, 동의서를 방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히 습관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형해화(形骸化)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현행법의 포괄 동의 금지, 구분동의, 필수·선택동의 요구는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각 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및 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법상 동의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U GDPR 제 5 조에서 규정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우리 법에도 내재화하는 방안, 동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철회권 보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대시보드를 의무화하는 방안, 동의 없이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확대 방안, 차별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동의 항목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그 밖에 고지 등 정보제공 방법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의 고안을 통해 동의제도의 유연성과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동의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Privacy of Movable Video Devices

한국경호경비학회 / 시큐리티 연구 <제 69 호>

계태화, 손승우

2021 년 12 월

● 초록

4차 산업시대, 드론·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제 정비 요구가 계속 되어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제·개정안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사후동의(opt-out)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특성상 정보주체가 촬영 대상 여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추상적 인식으로 사후적 통제 수단을 활용할 의지가 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드론·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규율체계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당면한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Privacy by Design'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주체의 인식수준과 기대하는 활용범위 등을 확인하여 '사회 통념상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CT 기술이 내재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에는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자율방어체계를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Leg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Transborder Data Flow(TDF)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ing on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 <17-3>

고수윤 (Go SUyun), 박시원(Park Siwon)

2022 년 09 월

● 초록

본 논문은 국제조약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약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국외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그 제약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하여는 특별규정만을 두고 있어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제공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 제 2 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이전시 추가적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적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국외이전 규정에 견주어 보아서도 매우 경직되고 강도 높은 규제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주요국의 규정방식과 비교해 볼 때,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연세법학회 / 연세법학<41-0>

경재웅(Kyoung Jai-uhng)

2023 년 01 월

● 초록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빅데이터의 활용 요구 확대와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의 유통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반법으로서 GDPR을 201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권,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처리제한권, 반대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매우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연방법률은 없었고, 다만 공공부문에서 프라이버시법이 연방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 하원에서 민간 부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이 발의되어 동년 7월 상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개인데이터보호 체계의 새로운 법률적 체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최근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칙 제 12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전에 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개인데이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형사처벌규정의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별칭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만 여러가지 개선할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국제적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용의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8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동향

투스너로이터코리아

2023.06.26

COPYRIGHT©LAWNB,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동향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및 [학회논문]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